■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39-546.
http://doi.org/10.17948/kcs.2022..97.539

『박해(博解)』 해제

송양섭(宋亮燮)*

- **저　　자** [編著者未詳]
- **판　　본** 筆寫本
- **발　　행** [發行地不明] : 戶曹, [正祖年間(1776-1800)]
- **형태사항** 不分卷5冊 : 無界, 9行24字 註雙行, 無魚尾 ; 22.6x15.8 cm
- **주기사항** 表題: 博解

  著者는 朴一源(?-?) 혹은 沈頤之(1735-1796)로 추정
  書名은 表題임

  受贈記: 昭和十六年(1941)九月一日
  幣原坦殿惠貺

  書腦上段墨書: 度(一-五)

  五針眼線裝
  印: 幣原坦印, 東洋文庫
- **현 소장처** 日本 東洋文庫
- **청구기호** Ⅶ-2-204

1. 안내정보

조선시대 호조(戶曹)의 조직구성과 부속기관별 역할, 재정운영을 규정하는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각종 제도와 그 연혁, 연간 세출입 등의 사항을 취합하여 정리한 문서이다.

2. 편저자 사항

『박해(博解)』는 호조가 주관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그것을 담당하여 저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정조 20년(1796) 7월 정조와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1745-1821)의 대화를 통해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이 때 국왕 정조는 호조판서 이시수에게 박일원(朴一源)이 낭관(郎官)으로 있을 때 편집한 『탁지지(度支志)』의 등본(謄本)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이시수는 심이지(沈頤之, 1735-1796)가 호조판서로 재임할 때 계사(計士)와 함께 '탁지(度支)'의 법례(法例)를 정리한 3권의 책자는 보았지만, 박일원이 편집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정조는 심이지가 만든 3권의 책자는 어람용으로 만들 것과 박일원이 편집한 것은 반드시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며 1건을 선사(繕寫)하여 호조에 비치해 둘 것을 지시하였다(『정조실록』 권45, 20년 7월 8일).

이 기사는 몇 가지 사실을 전해 준다. 먼저 정조 20년(1796)까지 호조에는 낭관 박일원이 만든 『탁지지(度支志)』와 호조판서 심이지가 탁지의 법례를 정리한 3권짜리 책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심이지가 만든 3권짜리 책은 어람용으로 만들어졌고, 박일원의 『탁지지』는 그 필사본이 호조에 비치되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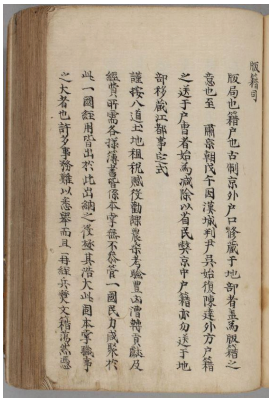
이후 호조 관련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라는 정조의 지시는 보이지 않는데 이미 두 종류의 문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조 연간 호조의 사례를 정리한 책자는 두 건으로 바로 『탁지지』와 『박해(博解)』가 그것일 확률이 크다. 앞의 기사를 고려하고 '당저(當宁)'와 '임자(壬子)'라는 표현을 토대로 『박해』는 정조 16년(1792)-20년(1796)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해』의 저자 또한 심이지나 박일원 중 한 명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홍재전서』에 따르면 『탁지지』는 낭관 박일원이 정조의 명을 받고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弘齋全書』 권183, 度支志二十二卷) 따라서 심이지가 정리한 문서가 『박해』일 테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서 형식이나 내용 구성, 문체 등을 살펴볼 때 『탁지지』가 많은 논의와 자료 수집을 통해 편찬된 데 반해 『박해』는 전체적인 구성과 서술패턴이 개인저술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축약인용 방식이나 구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해』는 『탁지지』의 상세함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호조판서 심이지와 계사(計士)들이 함께 정리한 문서가 현재 전해지는 『탁지지』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정조의 명을 받고 『탁지지』를 편집한 박일원이 최종적으로 그 문서의 이름을 『박해』라고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심이지가 만든 문서가 어람용으로 제작되어 정조에게 올려졌는데 체제상 『탁지지』가 이에 더 부합한다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 또한 추정일 뿐 정확한 저자를 확정하기는 힘들다. 요컨대 『박해』는 정조 16년(1792)-20년(1796) 사이에 호조낭관 박일원 혹은 호조판서 심이지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구성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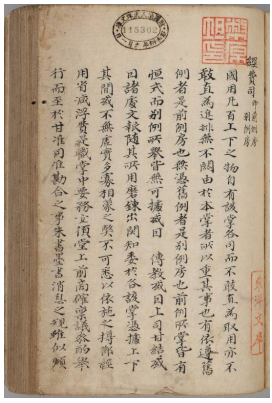


版籍司

版局也籍戶也古制京外戶口簿藏于地部者蓋為版籍之意也至 肅宗朝戊午因漢城判尹吳始復陞建外方戶籍之遂于戶曹者始為減除以省民弊京中戶籍亦勿遂于地部移藏江都事定式

謹稽八道土地租稅戶口貢賦及鹽鐵魚鹽船稅山澤之利以至軍保之額各邑田結之數與夫量田均役之法以上諸條皆載於 國典而 國初之制與 今日之宜或有損益或有因革而其大綱則不外乎此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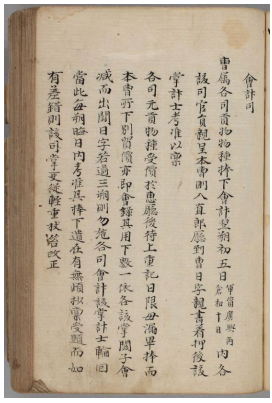
[그림 1] 책1의 版籍司



經費司

國用凡百工作之物自有該掌各司而不敢濫觴亦不敢吝惜無不關由於本掌者然以重其事也有依遵舊例者是前例房也無舊例者是創例房也前例則掌官有恒式而創例則既掌官無可據藏曰 傳教則上司曰綸或曰諸處文移隨其所用畢鍊出關知委於該掌邊據上下其間或不無應貢多寡相參之弊不可悉以依施之持難經用省減浮費是惟堂上前高確當議參酌舉行而至於甘旨供動合之事未嘗渉及消息之機雖似

[그림 2] 책4의 經費司



會計司

會計司

曹屬各司貢物捧持下會計是賴初五 曹官員點考內各

設司官員親呈本曹則八員郎廳到曹日 堂親書考捧後該

堂計士考准以啓

各司元貢物種受價於惠廳後待上年記日限毋濫畢持而

本曹呈下則當價亦即會錄其用下數一依各該掌關字會

減而出關日字若過三朔則勿施各司會計該掌計士輒因

當此毋利時日內考准其持下過仕有無踰限當受罰而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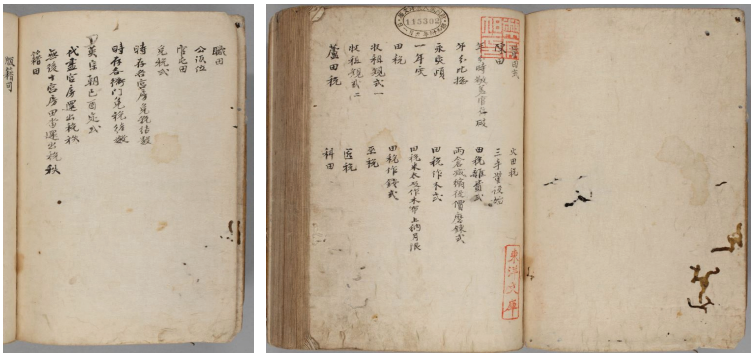
有差錯則該司堂吏從輕重拔啓改正

[그림 3] 책5의 會計司

총 5책의 필사본으로 구성된 본서의 표제는 '박해(博解)'이며, 표제 아래 '일(一), 이(二), 삼(三), 사(四), 오(五)'를 기록하여 각 책의 차례를 표기하였다. 내제(內題)는 없으며 각 책마다 첫 장에 바로 목차가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1책에서 3책은 판적사(版籍司), 4책은 경비사(經費司), 5책은 회계사(會計司)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책별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博解 一

量田式, 陳田, 年分時敬差官存破, 年分比摠, 永灾頃, 一年灾, 田稅, 收稅規式一, 收稅規式二, 蘆田稅, 火田稅, 三手糧設始, 田稅雜費式, 兩倉減縮役價磨鍊式, 田稅作木式, 田稅米太及作木布上納月限, 田稅作錢式, 巫稅, 匠稅, 科田, 職田, 公須位, 官屯田, 免稅式, 時存各宮房免稅結數, 時存各衙門免稅結數, 英宗朝己酉定式, 代盡宮房還出稅秩, 無後十宮房田畓還出稅秩, 籍田



[그림 4] 책1의 目錄

博解 二

漕轉, 點檢式, 兩湖漕倉, 海運兼帶, 漕復, 領納漕倉, 漕舡, 裝舡實載, 添載, 濫載, 舡價, 逢點, 領舡實監色定送, 舊舡發賣, 生徵, 上納月限, 沿送護邑, 差員論賞, 敗舡拯劣, 致敗, 和水, 捧稅, 嶺南漕舡變通, 惠廳節目, 陸運, 站運, 減租施惠

博解 三

戶曹一年經費出入, 各道田稅及寺奴貢匠巫稅上納數, 奴婢貢式, 各宮房賜與奴婢 王牌成出數, 八道寺奴婢口數及貢木布上納數, 年例應行事件, 定式, 大同設始, 訓局兼料變通

博解 四
前例房, 都下節目, 節使方物三起每起所入, 謝恩方物, 別例房, 別致賻式, 別傳敎從厚題給前例, 倭人禮單式, 各司進排式, 各處實入物種折價式, 別庫, 稅穀捧上式, 扶助式, 等筆試紙曆書分兒式, 料錄色, 實職各科祿, 軍職祿, 外任祿, 奉朝賀祿, 廣興倉, 作紙色, 軍資監, 五斗色, 作紙色, 雜物色, 各樣式例, 曆書分兒, 煎藥分兒, 醍醐湯分兒, 春秋兩等筆每等, 各試試筆, 扶助式, 賻儀式

博解 五
會計司設施, 還穀設始, 取耗式, 歲幣色, 歲幣各種封進數, 每年措備物種, 勅使禮單式, 官帽子變通, 銀色, 別營, 縮會減改定式, 各樣式例, 扶助式, 歲饌式, 分兒式, 致賻式, 空石公用每朔, 版別房, 舊司畜署, 舊司贍寺, 各樣式例, 賻儀式

전체적으로 호조의 속사(屬司) 중 재정수입을 총괄하던 판적사가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경비사와 회계사가 뒤를 잇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 구성은 항목별 시행 규정을 연혁에 따라 지역별로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기록하였다. 총 전결수, 면세전, 1년 경비 등 시기별 수치를 해당 명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서지적 가치

18세기 호조의 법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는 현재까지 『탁지지』가 거의 유일했다. 물론 『속대전』·『대전통편』·『만기요람』·『증보문헌비고』 등에서 관련 정보를 단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호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호조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탁지지』에 의존했음을 감안할 때 『박해』에 담긴 호조의 제반 사례와 조직 구조에 대한 정보는 새로운 연구의 활로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탁지지』보다 늦은 정조 16년(1792)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해』와 『탁지지』 두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 사료에서 그 논의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두 문서의 작성자들도 많은 부분 연대기 기록에 의지하여 그 연혁을 작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용 형식은 약간 다르다. 『탁지지』가 사례와 논의 과정을 비교적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박해』는 요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박해』가 1인 혹은 소수의 인원에 의해 찬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박해』에 담겨 있는 호조의 제반 사례와 연혁 등의 정보는 이후 『만기요람』과 같은 재정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호조의 재정정책을 살펴보는 데 있어 『탁지지』를 기본으로 『박해』가 보충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해』는 지금까지 국내외에 이본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하겠다.

5. 내용적 가치

『박해(博解)』의 서명은 호조의 사례를 폭넓게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으로 이는 실제 내용 면에서 호조를 중심으로 제반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구성에서 나타난다. 이는 『탁지지』가 공물(貢物)과 군자(軍資)·균역(均役) 등 호조가 직접적으로 관할하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정리한 것과 비견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박해』의 구성은 크게 판적사·경비사·회계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탁지지』가 호조의 각 속사(屬司)의 조직 구조를 먼저 서술하고, 다시 관련 법령을 여러 속사를 오가며 서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 『박해』는 각 속사별로 구분한 영역 안에서 해당 속사가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속사별 업무와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박해』가 정조 16년(1792)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정조 즉위초 강력하게 추진된 각종 재정시책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내용상 주목되는 점은 1년 경비를 기록한 부분에

『탁지지』를 비롯한 다른 재정서는 호조의 수입을 별도의 분류 없이 일괄적으로 품목에 따라 기록한 데 반해 『박해』에서는 수입을 '실상납(實上納)'과 '가입(加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이다. 『박해』에 가입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상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민간에서 받는 수입을 기록하였고, 그 옆에 별도로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기재하였다. 그것이 바로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에 기재된 가입이다. 지금까지 실상납과 가입수입을 분류한 것은 『탁지전부고』가 유일했으나 『박해』를 통해 실상납과 가입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탁지전부고』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두 가지 종류의 수입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면 호조의 재정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소략한 경비사와 회계사의 조직 구조와 역할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향후 호조의 조직과 운영을 살펴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리들에게 시기별로 지급하는 각종 물품과 관청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 참고문헌

임성수, 「『度支田賦考』를 통해 본 호조의 재원 파악방식과 재정구조 변화」, 『민족문화연구』 5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한우근, 「『度支志』 解題」, 『朝鮮時代 史料 解題 譯註』, 한국학술정보, 2001.